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정 관

2019. 7. 24.

전 문

1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하게 하여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게 하는 '조용한 생활의 혁명'을 긴 안목으로 전망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과 재순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기부금을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단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가게를 운영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그 지역 풀뿌리 시민들의 문화와 공육(共育)의 사랑방이 되고자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가게는 저개발국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여 경제적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인 '공정무역'(Fair Trade)에 정성과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상근활동가들의 헌신적 활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 활동을 기본적 추진력으로 운영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우정과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일구어 내고자 합니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도모하고, 처우와 복지, 각 개인의 자기 계발과 사회적 능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절차들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

아름다운가게는 우리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나눔의 정신과 가치를 <자매단체>인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합니다. 2002년 10월 설립된 아름다운가게와 2000년 8월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나눔 문화의 확산>이라는 설립이념에 따라 2002년부터 2007년까지하나의 단체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이 성장하고,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해 2008년 각각 독립법인으로 재출범을 하였습니다.

독립법인화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재활용품·재사용품 기증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되살림 문화의 확산, 아름다운재단은 모금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성장해온 두 법인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 와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의 경쟁과 중복을 피하고, 협력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은 협력과 연대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다음세대까지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우리사회 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그 명칭을 '아름다운가게'(영문표기: The Beautiful Store Found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아름다운가게는 위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아름다운가게는 각 지역 재사용가게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① 아름다운가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1.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 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
 - 2.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 3. 수익금을 지역민을 위한 공익과 자선에 사용하는 일
 - 4.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 5. 나눔장터, 벼룩시장 등 시민 참여 장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
 - 6.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 7. 저개발국가의 공정무역 상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일
 - 8. 저개발국가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

- 9. 국내외의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일
- 10. 자원활동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일
- 11. 재활용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 12. 공정무역 교육원과 공정무역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 13. 기타 아름다운가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② 아름다운가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생태적 상품, 사회적경제 상품 및 식품을 제조, 구매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일
 - 2.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 3.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 사업
 - 4.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4조 (사무소 등)

아름다운가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 지역에 분무소와 매장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자원활동가 및 후원회원

제5조 (정의)

① 자원활동가

아름다운가게의 목적에 공감, 찬동하여 자발적으로 정기 봉사하고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라 한다.

② 후원회원

아름다운가게의 목적에 공감, 찬동하여 자발적으로 기부, 기증하고 회원모집 및 가입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을 아름다운가게의 후원회원이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자원활동가

- 1. 자원활동가는 아름다운가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의 동반자로서 참여 할 수 있다.
- 2. 자원활동가는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3. 자원활동가의 의무, 종결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② 후원회원

- 후원회원은 아름다운가게의 기부금 모금 및 배분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정보의 제공방식과 기부기증 서비스에의 참여, 종결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약관으로 정한다.
- 2. 후원회원은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3. 후원회원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기부금 및 기증물품을 후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원활동가 모임)

- ① 자원활동가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친교, 자선, 교육 등 아름다운가게의 목적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자원활동가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자원활동가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원활동가 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 1 절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 ① 아름다운가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
 - 3. 감사 2인
- ② 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후원이사 대표자
 - 2. 활동천사 대표자
 - 3. 간사 대표자
 - 4. 지역 운영자문위원회 대표자

제9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의 임기는 3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경우 소속단위의 임기규정을 따른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였던 자가 이사가 되거나 이사였던 자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된 경우, 그 이사 또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임원의 임기는 총 합산하여 1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임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 ②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위촉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아름다운가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정당 활동, 정견 관철을 위해 본 법인의 임원직을 사용하는 행위
 - 5.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아름다운가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아름다운가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근임원에게 의견을 개진한다.
- ③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 중 최고령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

- ① 감사는 아름다운가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사무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상임이사)

- ① 이사회는 제10조 제4항에 의한 상근하는 임원 중 1인을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한 직무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체를 기획, 총괄한다.

제 2 절 명예임원

제15조 (명예임원의 종류와 임기 등)

- ① 아름다운가게는 이사와 별도로 고문, 후원이사, 자문위원, 지역공동대표 등 명예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명예임원은 이사와 사무처, 명예임원의 추천을 받아 상근임원이 추대하고 이사장이임명한다.

제16조 (명예임원의 역할 및 예우 등)

명예임원의 역할과 정수, 예우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3 절 이 사회

제17조 (이사회 구성 및 지위)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아름다운가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3.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전문성과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임원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 (이사회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2개월마다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본 단체의 해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② 이사는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이사가 본 단체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소집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결의를 의결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을 공개하며, 그 절차와 범위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 1. 임원 2인 이하
 - 2. 자원활동가 5인 이하
 - 3. 사무처 5인 이하

- 4. 지역 운영자문위원 6인 이하
- ②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방식, 의결구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아름다운가게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 본 단체의 대내외적 활동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2. 자원활동의 활성화·지원 및 자원활동가들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 공익 및 자선활동의 계획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풀뿌리 시민단체 및 지역공동체들과의 연대・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아름다운가게의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 장 또는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24조 (지역 운영자문위원회)

- ① 지역본부별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후원을 하는 지역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지역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5조 (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

- ① 아름다운가게는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배치, 정수 등은 사무처에서 정한다.
- ④ 사무처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처 간사의 임명)

- ① 사무처의 간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간사의 선발과 교육, 상벌제도, 복지, 급여,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내규로 정한다.

제27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아름다운가게는 각 광역시·도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 ① 아름다운가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 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평가, 증액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② 아름다운가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에 철저한 주의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회계구분)

아름다운가게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 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3조 (회계규정 등)

- ①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사무처의 내규로 별도의 회계 규정과 지침을 둔다.
- ②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③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아름다운가게의 모든 재정사항은 내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다.

제34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아름다운가게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및 공개)

- ① 아름다운가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 ② 아름다운가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 (내규)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38조 (법인 정관의 변경)

아름다운가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 (법인의 해산)

아름다운가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아름다운가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인가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 (구 기관의 해산)

아름다운가게가 아름다운재단 산하에 있을 때의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칭함)에 의해 선임된 모든 임원, 명예임원,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이 효력을 얻음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한다. 단, 내규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선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내규 개정 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효력발생)

2017년 4월 28일 이전에 취임한 임원에게는 제9조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